#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	2014	_,	1 /
번호	2014	, -	14

제를	출년旨	일일	2014. 02. 24.
제	출	자	거창군수

#### 1. 제안이유

○ 2014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거창군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기금 원금의 직접대출 방식 도입, 융자지원 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(안 제3조)

- 기금조성 목표액 200억원, 회계연도 마다 10억원 이상 출연 의무 규정 삭제함
- 나.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항 삭제함(안 제8조제3항제2호, 제12조)

#### 다.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액을 변경함(안 제11조제1항·제2항)

- ① 운영자금의 융자한도액 변경(1천만원 이하 ⇒ 3천만원 이하)
- ② 시설자금의 융자조건 변경(3년 거치 5년 균분상환

⇒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)

## 라. 경과조치 및 적용례를 신설함(부칙 제2조, 제3조)

- ① 경과조치: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융자금 의 이자차액 보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.
- ② 융자기간의 적용례 :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이후 최초로 성립하는 융자금의 대출부터 적용한다.

# 3. 참고사항

## 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2조,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# 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4. 1. 10. ~ 2014. 1. 31.

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#### 거창군 조례 제 호

#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"기금조성 목표액은 200억원으로 하며,"를 "기금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반영하여 회계연도마다 10억원 이상 출연하여야 한다." 를 "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."로 한다.

제4조의2제3항제1호·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제8조제1항에 따른 융자사업 자금
- 2.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지원

제7조제1항 중 "기금관리수탁기관의 자금"을 "기금의 이자수입"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"1천만원"을 "3천만원"으로 하고,

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"3년 거치 5년 균분상환"은 "2년 거치 3년 균분상 환"으로 한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융자금의 이자 차액 보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.
- 제3조(융자기간의 적용례)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성립하는 융자금의 대출부터 적용한다.

# 신구조문 대비표

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개 정 안
제3조(기금의 설치 및 조성) ① (생 략) ② 기금조성 목표액은 200억원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군 출연금 2. 기금운용 수익금 3. 그 밖의 수입금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회계연도 마다 10억원 이상 출연하여야 한다.	제3조(기금의 설치 및 조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기금은 1 2 3 ③
제4조의2(특별회계의 설치·운영) ① ~ ② (생 략)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. 1.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지원 2. 제12조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3.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	제4조의2(특별회계의 설치·운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1. 제8조제1항에 따른 융자사업 자금 2.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지원 3
제7조(융자 및 보조사업 재원) ① 기금에서 융자하는 재원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도마다 적립되는 기금 조성액과 <u>기금관리수탁기관의 자금</u> 으로 충당한다.	제7조(융자 및 보조사업 재원) ①
제8조(융자 및 보조지원 대상사업 및 용도) ① ~ ② (생 략) ③ 제7조제2항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조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자부담 보험료 일부지원 2.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사업에 지원 된 융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③ 농산물의 가격폭락에 따른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	제8조(융자 및 보조지원 대상사업 및 용도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1

현 행	개 정 안
4. 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비 지원 5.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 정된 사업	4  5
제11조(융자 및 보조지원 조건) ① 융자한도액은 시설자금 5천만원 이하, 생산에따른 운영자금은 <u>1천만원</u> 이하로 지원한다.	제11조(융자 및 보조지원 조건) ① <u>3천만원</u>
②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출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.	② 
1. 시설자금은 <u>3년 거치 5년 균분상환</u> 2. 생산에 따른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③ ~ ④ (생 략)]	1 <u>2년 거치 3년 균분상환</u> 2  ③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이자차액 보전) ① 군수는 기 금관리수탁기관의 자금으로 융자한 경 우에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금을 지원한다. ② 이자차액 보전재원은 기금 이식금 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기금에서 충 당한다. ③ 이자차액 보전금리 및 절차는 규칙 으로 정한다.	<삭 제>